

# 한 돈 리포트

2024. 8.  
Vol. 11.

1. [조사연구①] 악성민원 현황 및 해외 민원면책 제도 조사 .....	2
2. [조사연구②]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 .....	12
3. [조사연구③] 사산의 원인 및 감소대책 .....	16
4. [조사연구④]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에 한돈 추가 방안(안)	26
5. [전망] 한돈팜스 2024년 8월 수급 전망 보고서 .....	42
6. [해외동향] 글로벌 돼지 이슈 .....	44

한 돈 미 래 연 구 소

## 악성민원 현황 및 해외 민원면책 제도 조사

### 《 요약 》

- ◎ 우리사회에서는 대화보다는 고소·고발 등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민원이 기하 급수적(연간 1천2백만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 대두
- ◎ 악성민원 급증으로 공무원 사고도 증가, 정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법 개정(' 22. 7.), 범정부 종합대책(' 24. 5.) 발표 등 추진
- ◎ 하지만, 악성민원 피해자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에 확대되어, 포괄적인 범위의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 대책 필요
- ◎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사례로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를 살펴보면, 농업·관광 등 7개 산업분야에서 3가지\* 기준 충족 시 민원 책임 면제 중
  - \* (원칙)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는 장소로 이사를 온 사람이 이사할 때 이미 그 민원이 존재했다면,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 ◎ 국내에서는 프랑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범산업(농업, 상업, 공업, 관광 등) 연대를 통한 민원 면책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 1 추진배경

- 모범적인 보성 한돈농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비극적 선택(' 23.7.20.)
  - 보성농가는 대한한돈협회 보성지부장 역임, 깨끗한축산농장인증, 전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타의 모범이 된 인물로 평가

- 고인은 수 개월간 반복된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규제로 인한 힘든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남



그림. 보성농가 추모제 및 기자회견(' 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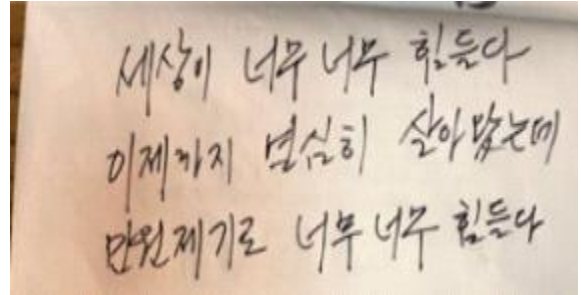


그림. 보성농가의 유서  
(유족 뜻에 따라 공개된 내용 발췌)

- 고인의 유가족은 환경부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하여, 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의 민원 대응 방식의 변화’ 등을 요구(' 23.8.16.)
- 전남 보성 농가의 추모(' 23.8.16.) 1주기 도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서는 소음·냄새·진동 등 분쟁사건 처리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으나,
  - 주민의 악성 민원과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규제를 방지하고, 한돈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여전히 없음

## 2 민원현황

### 가. 폭주하는 민원 ‘민원공화국’

- “年12,381,209건 폭격...민원 공화국” (매일경제, ' 23.8.30) 기사를 보면,
  -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을 대화보다는 고소·고발 등 사법 조치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악성 민원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보도

### 나. 정부, 악성민원 급증으로 민원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 공무원 대상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 상습·반복 민원이 90% 육박
  - ' 24.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민원제기한 것으로 나타나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상습·반복 민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폭언·폭행 유형이 가장 빈발
-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종결 민원에 대한 추가 민원 제기 건수는 6.61건(' 21년 기준) 달해
-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거부 불가,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상당 시간 낭비
- 지난 3월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시작으로, 양주·남양주·의정부시 등 공무원 3명이 잇달아 사망
- 이에, 정부에서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개정('22.7.12. 시행)
-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
- \*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권익을 보호 목적

**< 반복민원 3단계 처리절차 >**

<b>구분</b>	<b>1단계</b>	<b>2단계</b>	<b>3단계</b>
<b>민원 제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회 이상 반복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를 거쳐 종결 처리 후 다시 접수된 반복민원 중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복민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후 민원인의 재차 반복 민원 중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반복민원</li> </ul>
<b>민원 처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 반복민원) <b>처리주무부서장결재로 종결</b></li> <li>◦ (다수인관련 반복민원) <b>민원조정위원회 심의 후 종결 처리</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li> <li>※ 다수인관련 반복민원은 기관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3단계 직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감독기관 有) 지도감독기관에 <b>의견제시 요청</b></li> <li>◦ (지도·감독기관 無) 위원장 직급 상향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li> </ul>

※ 출처 :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

②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24. 5. 2.)

- ‘유사, 반복’ 등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 확대 등 포함

다. 축산, 심화되는 냄새민원으로 어려움 가중

1) 축산시설 냄새민원이 전체 냄새민원의 약 40% 차지

○ '22년 냄새민원 33,592건 중 축산시설 민원은 13,656건(40.7%)

- 전체 냄새 민원수 : ('14) 14,816건 → ('22) 33,592건, 2.3배 증가

- 축산 냄새 민원수 : ('14) 2,838건 → ('22) 13,656건, 4.8배 증가

○ 전체 냄새민원 중 축산시설 냄새민원 비율 지속 증가

- 축산/전체 비율 : ('14) 19.2% → ('16) 25.9% → ('19) 30.9% → ('22) 40.7%

표. 전국 지자체 냄새 민원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14,816	15,573	24,748	22,851	32,452	40,854	39,902	39,397	33,592
축산 시설	2,838 (19.2%)	4,323 (27.8%)	6,398 (25.9%)	6,112 (26.7%)	6,705 (20.7%)	12,631 (30.9%)	14,345 (36.0%)	13,616 (34.6%)	13,656 (40.7%)

※ 출처 : 국정감사 설명자료(소병훈 의원실, 2023. 10.) 및 환경부

○ 국민신고 민원접수('17년 기준) 사례를 보면,

- 축산시설 냄새민원 사례는 총 595건(중복·반복 제외),

- 축종별 민원은 양돈 35%(206건), 한우 23%(137건), 양계 1%(57건) 순

2) 끊이지 않는 환경분쟁조정과 농가의 피해배상 책임 부과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행정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



그림. 환경분쟁 조정제도 설명자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따르면,
  - 환경분쟁조정 사건은 30년간(1991~2019) 총 5,084건, 이중 4,313건 처리
  - 원인은 소음·진동 84.5%, 일조 5.9%, 대기오염 5.2%, 수질오염 2.3% 등 순
- 양돈 관련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인당 50만원 ~ 2백만원 상당) 책임 판결

- (사례1) ○○에서 거주하는 마을 주민 10명이 인근 돈사 및 축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영농조합을 상대로 피해배상 요구(중앙환조 18-3-71)
- (사례2) ○○에 거주하는 주민 37명이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을 상대로 피해배상 요구(중앙환조 18-3-13) 등등

### 3 문제점

#### □ 악성민원 피해자(농가 등)에 대한 제도적인 안전장치 부재

- 악성민원이 공무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축산의 경우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농가에 과도한 행정조치 요구

- 냄새 관련 악성민원 반복 → 공직자의 직무 스트레스 증가 → 국가 행정력 저하 → 축산농가 대상 과도한 행정조치 등 부작용 초래

- 악성민원은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아, 공무원뿐만 아니라 악성민원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안전장치 필요

### 4 개선방안

#### □ [해외제도 조사연구] 프랑스의 민원면책 제도

- 프랑스는 법에 근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에서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민원에 대한 책임 면제

- (원칙) 시끄럽거나 냄새가 나는 장소로 이사를 온 사람이 이사할 때 이미 그 민원이 존재했다면, 민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 《 프랑스의 민원 면책 기준 ‘3가지’ 》**

- ① 사전점유 : 민원인보다 먼저 터를 잡아 돼지를 키웠는가?
  - ② 동일조건 : 돼지 사육두수가 동일한가?<sup>1)</sup>
  - ③ 법규준수 :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가?
- ☞ 3가지 기준 충족 시 민원에 대한 책임이 없음

1) 1990년 1월 17일, 제2 민사법원, Société des ciments Lafarge c/ Morello, 항소번호 88-18.965

○ 프랑스의 법령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법령	주요내용	비고
도시계획법 L. 421-9조 (197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책임 면제 기준 마련</li> <li>- ▲ 우선 행위, ▲ 동일한 조건 유지</li> <li>• 면책 기준 부합 시 보상 청구권 비발생</li> </ul>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L. 122-16조 (198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책임 면제 기준 추가</li> <li>- (추가기준) 시행 중인 법률 또는 규제 조항 준수</li> </ul>	※ (이관) 농업정책에 관한 법률 80-502호 제75조에 의해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L. 112-16 조항으로 이전(1980. 7. 4.)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L. 133-8조 (2020.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적용 대상업종 확대</li> <li>- (기존) 농업, 공업, 공예, 상업 → (추가) 기존 업종 + <u>관광, 문화, 항공</u></li> </ul>	※ (개정) 조문의 범위를 항공, 관광, 문화 활동으로 확대하면서 2020년 1월 29일 조항을 변경하지 않고 같은 법제 113-8조로 이전

법령	주요내용	비고
농촌 및 해상 어업법* L. 311-1조 (2024.4.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책임 면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 정도 동일, 사전 점유, 법규 준수</li> </ul> </li> <li>※ 민법에도 명시(민법 제4장 제1253조)</li> <li>• 민법상 책임 비발생</li> </ul>	※ (이관 농가에 더 유연하게 해당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농촌 및 해상 어업법 L 311-1조로 이전(2024.4.17.) ※ 국회 53인 중 46명 찬성 7명 반대로 해당 법률 채택 (2024. 4. 17일 부터 시행)

\* < 농촌 및 해상 어업법 개정('24.4.) 관련 찬반 의견 >

① 찬성 의견

- M. Bruno Millienne(현대민주당) : “소방대의 사이렌 소리 등에 익숙한 것처럼 시골에서 우리의 식량 주권에 필수적인 자연의 소음과 냄새에 익숙해져야 한다”
- M. Victor Habert-Dassault(공화당) : “농장의 냄새나 트랙터의 소음 등 모두 농촌 생활의 일부이며 새롭게 이주한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며, 학대 행위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② 반대의견

- M. Thomas Portes(생물을 위한 생태 혁명당\*) :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유해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피해의 성격과 심각성에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산업가에게 책임을 면제 해준다.”

\* 생물을 위한 생태혁명 정당(Ecological Revolution for the Living): 동물을 상품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당

- M. Jérémie Jordanoff(생태학자) : “단지 이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의 삶의 질을 보상 없이 악화시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가장 오래된 소유주에게 일종의 저명한 영역을 만들어주고 있다.”

※ 출처 : 농촌 및 해상 어업법 개정 관련 회의록('24. 4. 8.) 중 발췌



□ **(공동대응) 범 산업 연대를 통한 민원면책 제도의 도입 공감대 확산**

- 민원면책 제도를 농축산업 국한으로 추진 시 제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어,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범 산업과 연대\*한 국내 도입 방안 검토

\* 프랑스의 경우 농업·공업·공예·상업·관광·문화·항공 등 산업 전반 적용 중

□ **(민원처리) 냄새 등 공해 관련 반복성 악성민원의 처리절차 개선**

- 민원인이 동일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출 시, 법\*에 따라 종결 처리 가능

\* 민원처리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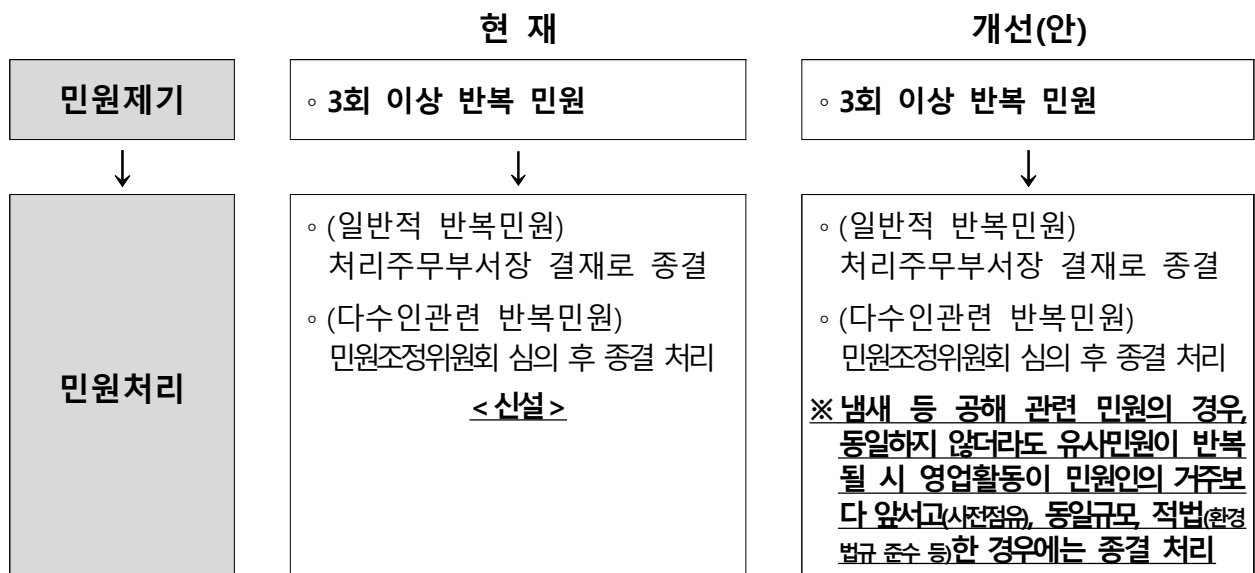
- 하지만, 냄새 등 공해 민원은 해당 민원의 제출일이 다른 경우, 공해 발생 정도가 날마다 다르기에 동일민원으로 보지 않아 종결처리 요건 불성립

☞ 동일뿐 아니라 유사 민원의 반복도 종결 처리 가능토록 개선 필요

- 냄새 등 공해 관련 민원의 경우, 유사 민원이 반복될 시 사전점유, 법규준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체 종결 처리\* 결정

\* (부연설명) 농촌에서 축사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축사가 악취방지법 등 위법사항 없이 적법하게 운영중이고 사육규모가 동일한 경우에는 유사민원으로 보고, 유사민원이 3회 이상 반복 시 자체 종결 처리

< 민원인의 반복민원 대응지침 >



(별첨)

《 프랑스의 민원 면책 제도 관련 조문 》

도시 계획법 421-9조 (1976. 12. 31)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112-16조 (1980. 7. 4.)	프랑스 건설 및 주택법 113-8조 (2020. 1. 29)	농촌 및 해상 어업법 311-1조(2024. 4. 17)	민법(Code civil) 제4장 제1253조(2024. 4. 17)
<p><u>농업, 공업, 공예 또는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소음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가 소음 유발 활동이 이미 존재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활동이 계속된 후에 신청된 경우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u></p>	<p><u>농업, 공업, 공예 또는 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공해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가 신청되었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이 존재한 후에 판매 또는 임대 증거가 작성된 경우, 이러한 활동이 시행 중인 입법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되었다면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u></p>	<p><u>농업, 공업, 공예, 상업, 관광, 문화 또는 항공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로 인해 건물 거주자에게 발생한 피해는 이러한 소음에 노출된 건물에 대한 계획 허가를 신청했거나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이 존재한 후에 매매 또는 임대차 증거가 작성된 경우, 해당 활동이 시행 중인 법률 또는 규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되었다면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u></p>	<p><u>민법 제1253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향유권을 부여하는 행위 이후에 계속된 농업 활동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교란*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활동의 행사가 법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조건에서 또는 그 성격이나 강도에 따라 교란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u></p>	<p><u>프랑스 농어촌 및 해양 어업법 L. 311-1-1조에 따라, 이 책임은 비정상적인 방해가 그 성격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향유권을 부여하는 증거 이전에 존재했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날짜에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비정상적인 교란을 악화시키지 않는 동일한 조건 또는 새로운 조건 하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u></p>

\* 비정상적인 교란 : 공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뜻

- [농민신문] 축산냄새 악성 민원에 면책제도 도입 검토하자(’ 24. 8.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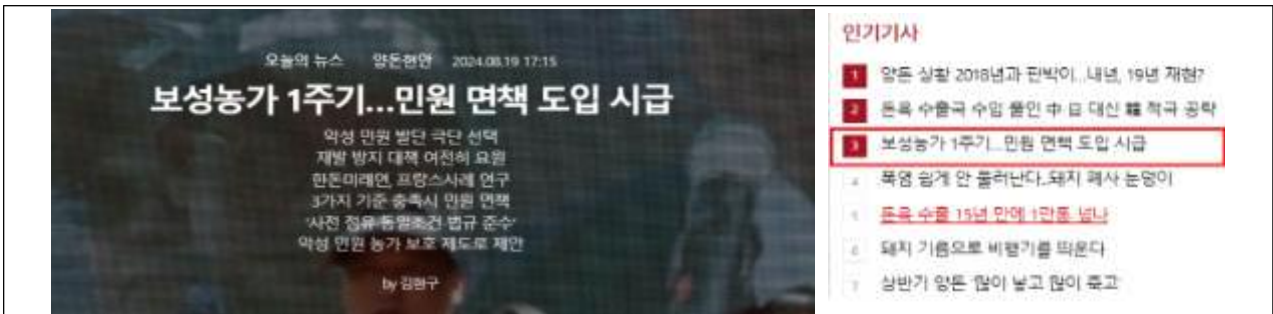
- [축산신문] 이슈\_죽어야 끝난다는 악성민원 해법은(’ 24. 8. 22.)



- [한국농어민신문] 보성 한돈농가 1주기...악성 민원 안전장치 논의 활발(’ 24. 8. 14.)



- [양돈타임스] 보성농가 1주기...민원 면책 도입 시급(’ 24. 8. 19.)



## 등급제 정산 확대 관련 검토

### 1 검토배경

- 한돈협, 등급제 정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급제 정산비율 여전히 낮아
  - (' 15. 07.) 한돈협-육수협, 등급제 정산 정착 위한 공동협약(MOU) 체결
  - (' 17. 12.) 한돈협, '탕박등급제 전면 시행을 위한 우리의 요구' 발표
  - (' 20. 03.) 축산물유통정보조사 결과, 등급제 정산 비율 27.7%에 불과
- 도매시장의 비정상적인 등급출현율로 농가의 합당한 이익 보장 어려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을 보면, 도매시장이 전체보다 10%p 낮음

구분	전 체(A)	도매시장(B)	차이(B-A)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70% 이상	60% 미만	10%p

- 지난 10년간 돼지도체 등급출현율 변화를 보면,
  - 1등급 이상이 전체는 +3.7%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은 +0.9%만 상승
  - 2등급 출현율이 전체는 -4%p 최대 감소, 도매시장은 -0.8%p 소폭 감소

구분		' 14(A)	' 23(B)	차이(B-A)
전 체	1+	29.6% (비중 3위)	34.9% (비중 2위)	5.3%p
	1	37.0% (비중 1위)	35.4% (비중 1위)	-1.6%p
	2	33.4% (비중 2위)	29.4% (비중 3위)	-4.0%p
도매시장	1+	25.0% (비중 3위)	27.7% (비중 3위)	2.7%p
	1	33.8% (비중 2위)	32.0% (비중 2위)	-1.8%p
	2	41.2% (비중 1위)	40.4% (비중 1위)	-0.8%p

- ☞ ▲등급제정산 확대 위한 그간 노력, ▲등급출현율 개선(2등급 감소, 1+ 등급 상승) 등을 고려, 농가 이익증대를 위한 등급제 정산 확대 필요
- 도매시장 평균가격에 기반한 지급률 정산방식은 지난 10년간 등급 출현율을 크게 개선한 농가에게 합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어려움

## 2 검토결과

### □ 등급제 정산 전환 시 매출 상승 효과

- (예시1) 현재 지급률 76%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든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5%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28백만 원 추가 매출 기대
- (예시2) 현재 지급률 75% 거래, 1등급 이상 출현율 80%, 모든 300두인 경우
  - 운송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전환하면, 지급률 정산 대비 연간 약 6천만 원 추가 매출 기대

표.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모든 300두 규모 기준)

(단위 : 천원)

매출액		매출차이(a-b)
등급제 정산(a) ※ 1등급 이상 출현율 80%	지급률 정산(b)	
2,411,465	(74%) 2,351,178	60,286
	(75%) 2,383,060	28,405
	(76%) 2,414,942	- 3,477

\* 《 등급개선에 따른 매출액 증가 》

- 2등급 - 1%p 감소 시 → 매출액은 모든 100두당 연 +100만원 증가
  - 모든 300두 농장에서 2등급 출현율 -5% 줄이면, 연 +1,500만원\* 매출 증가
  - \* 산출식 : 100만원 × 3(모든 300두/100두) × 5 = 1,500만원/년

### □ ‘등급제정산 모의전환 프로그램(제작 후 공개 예정)’ 활용

- 내 농장의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방식 매출액 비교
- 2등급 출현율 개선 계획 반영 시의 상승 매출액 예상

☞ (종합의견) 내 농장 사육규모, 기존 지급률, 인력운용(선별출하 등), 운송비, 지역여건(적정 거리에 위치한 등급제 정산 거래 업체 확보) 등을 종합 고려한 후 내 농장에 합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결정 필요

(붙임)

## 지급률과 등급제 정산 매출 비교

□ (적용기준) 모돈 300두\*, MSY 18두, 연간 출하두수 5,400두, 출하체중 115kg, 도체중 88kg, 등급출현율(1등급 이상 80% 기준)

\* (모돈 300두) 일관사육농장의 평균 모돈 사육두수 300두 기준 적용(2022년 한돈팜스 전산성적)

\* (도체중) 2023년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 (등급출현율) 축산물품질평가원 도체등급판정

□ (매출액 산출) 등급제 정산과 지급률 정산 두 가지 방식

○ (등급제 정산) 지육도체중 × 등급별 평균가격 - (도축수수료 + 등급판정수수료 + 검사수수료 + 자조금 + 운송비) + 부산물가격

○ (지급률 정산) 생체중 × 지급률\* × 평균가격 - (등급판정수수료 + 자조금) 표. 산출식 적용 값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등급 평균가('23년)	5,429원/kg	도축수수료	22,000원/두
1 등급 평균가('23년)	5,312원/kg	등판수수료	400원/두
2 등급 평균가('23년)	4,769원/kg	검사수수료	650원/두
'23년 전체 평균가(등외제외)	5,134원/kg	한돈자조금	1,100원/두
부산물가격	13,000원/두	운송비	4,300원/두

□ 비교결과

1) 등급제 정산금액을 지급률 기준으로 비교하면, 지급률 75.9% 수준

○ 1등급 이상 등급출현율 80% 적용 시, 등급제 정산금액은 2,411백만원

☞ 지급률로 환산 시 75.9% 수준

(단위 : 원)

등급출현율과 평균가격 (등급별 가격기준 : '23년)	등급제 정산금액	지급율 환산*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40%, 5,429원/kg</li> <li>• (1 ) 40%, 5,312원/kg</li> <li>• (2 ) 20%, 4,769원/kg</li> <li>• 전국평균가, 5,134원/kg</li> </ul>	2,411,465,040	75.9%	

\* 지급률 환산 산출식 : (등급제 정산금액 ÷ 연간 출하두수) + (자조금 + 등급판정수수료) ÷ 생체중 ÷ 5,134원(전체 평균가)

## 2) 지급률 변화에 따른 정산방식 간 매출액 차이 비교

- 지급률이 75.9% 미만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 지급률 정산 매출
- 지급률이 75.9% 초과인 경우, 등급제 정산 매출 < 지급률 정산 매출

### ①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농가 부담) 거래조건이 75%인 경우,

- 운송비 별도 농가 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4% 수준
- 등급제 정산방식을 적용하면, **모든 300두 기준 연간 +6,028만원, 모든 400두 기준 연간 + 8,037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가능**

### ② 내 농장의 지급률(운송비 별도 농가 부담) 거래조건이 78%인 경우,

- 운송비 별도 농가 부담에 따라, 실지급률은 77% 수준
- 지급률 정산방식이 등급제 정산방식보다 **모든 300두 기준 연간 + 3,536만원, 모든 400두 기준 연간 + 4,714만원의 추가 매출을 기대**

표. 지급률 변화에 따른 지급률 정산과 등급제 정산의 매출 차이 비교

(단위 : 원)

지급률	지급률 정산(a)	등급제 정산(b)	매출차이(a-b)
73%	2,319,296,220	<b>2,411,465,040</b>	-92,168,820
74%	2,351,178,360		-60,286,680
75%	2,383,060,500		-28,404,540
75.9%	<b>2,411,465,040</b>		<b>0</b>
76%	2,414,942,640		3,477,600
77%	2,446,824,780		35,359,740

## 3) 운송비 농가 부담시, 실제 지급률 변화

- 돼지 운송비 = 지급률 0.96%

-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부담한다면, 현재 지급률에서 - 1%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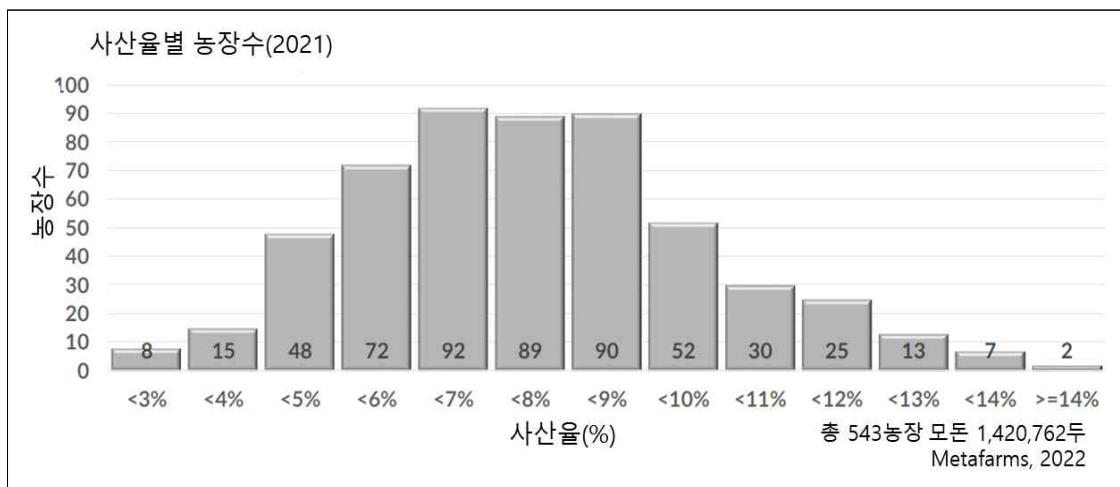
※ (예시) 지급률 거래조건이 76%인 농가에서 돼지운송비를 본인이 따로 부담하고 있다면, 실제 지급률은 76%에서 -1%p를 적용한 75%

## 사산의 원인 및 감소대책

### 1. 들어가는 글

- 사산의 사전적 정의는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것을 말함. 단태 동물의 경우 태아가 사망할 경우 유산 등을 통해 죽은 태아를 배출하고 다시 임신을 시도하게 되지만 돼지와 같이 다태 동물의 경우 임신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부 태아가 사망할 경우, 시기에 따라 가축과 뼈를 제외한 액체 부분은 모돈에 다시 흡수되어 미이라를 형성하기도 함 여기서 다루는 돼지의 사산은 미라를 제외한 임신 말기에 모든 형태가 온전해진 이후에 사망한 돼지를 뜻함
- 사산은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복당 0.8두(5개농장, 6823복), 2.84%(42,684복), 7.5%, 5.6%로 보고된 바 있음. 농장의 적절한 사산 비율은 3-5%이다. 7%가 넘으면 기록을 살피고 사산에 대한 대책을 실시해야 함
- 특히 사산은 농장간 성적 차이가 커서 관리에 따라 크게 개선할 여지가 많음. 그림1에는 2021년 미국 543개 농장(모든 142만두)의 기록을 바탕으로 사산율별로 농장수를 조사했는데 3-14%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농장의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Metafarms, 2022).

그림1. 미국 농장의 '사산율' 분포





## 2. 사산의 종류

- 사산은 분만전 사망과 분만중 사망으로 나눌 수 있는 데 70~80%가 분만중 사망임. 분만 직후에 사망하는 경우도 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산이라 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사산은 분만 중 질식이나 분만 직후 탈진이 원인임. 사산의 93%는 탯줄의 파열에 기인함. 탯줄의 길이는 60~70cm이어서 120~180cm인 자궁이 충분히 수축하지 않으면 분만 중에 탯줄이 파열될 수 있음
- 태아는 산소의 공급이 중단되어 부족하면 호흡을 개시하는데 탯줄이 너무 빨리 분리되거나 끊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음. 분만 도중 산도가 막히거나 모돈의 자궁 수축이 약할 때도 문제가 발생함. 탯줄이 파열되면 5분 이내에 자돈이 분만되어야 함

### ○ 분만 전 사망한 자돈

-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분만된 태아의 피부가 변색되고 윤기가 없어 부르르거나 끈적끈적, 또는 부패 초기 증상을 보이기도 함

### ○ 분만 중 사망한 자돈

- 태아의 폐는 임신 95-100일령에 발달하는데, 사산은 분만 중 진통이나 압박에 의해 탯줄을 통해 모돈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이 제한되거나 끊어져서 질식에 이르는 것임
- 자돈이 매우 신선하다. 자돈을 해부해서 폐를 검사해 보면 팽창(호흡)과 관련된 분홍색 부분이 없고 짙은 자두 빛을 띠고 있음. 분만 전 산도에서 숨 쉬기를 시도한 자돈의 경우 기도에 점액이 관찰될 수도 있음
- 90% 이상 사산 자돈은 분만 개시할 때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보고됨 (White, 2015).

○ 분만 후 사망한 자돈

- 분만 중에 죽었거나 분만 직후에 죽은 자돈은 외모가 신선하지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음. 가슴을 절개하여 폐를 확인하면 숨을 쉬지 않은 경우 색이 검고 호흡과 연관이 있는 핑크 반점이 없음. 분만 과정에서 숨을 쉬려고 시도한 자돈은 기관에서 점액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산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폐를 물에 띄워보는 것임. 태아는 분만할 때까지 모돈으로부터 혈액을 통해 산소를 공급받음
- 미국의 SMS(Swine Management Service)는 2005년부터 사산과 분만직 후 폐사 등을 포함한 이유까지의 육성율로 농장의 성적을 평가하여 비교·분석하고 있음(Ketchem, 2020).

3. 사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복당 산자수

- 산자수가 증가하면 사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총산자수도 증가하므로 생존산자수도 증가함(그림2).
- 산자수가 19두 이상이 되면 사산두수가 급격히 증가함(그림3).

그림2. 산자수에 따른 사산두수와 이유전폐사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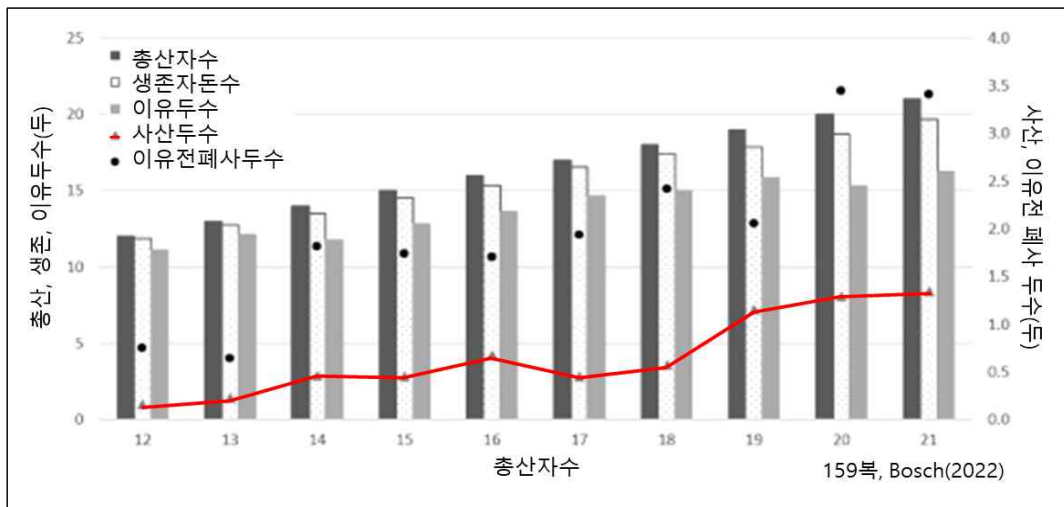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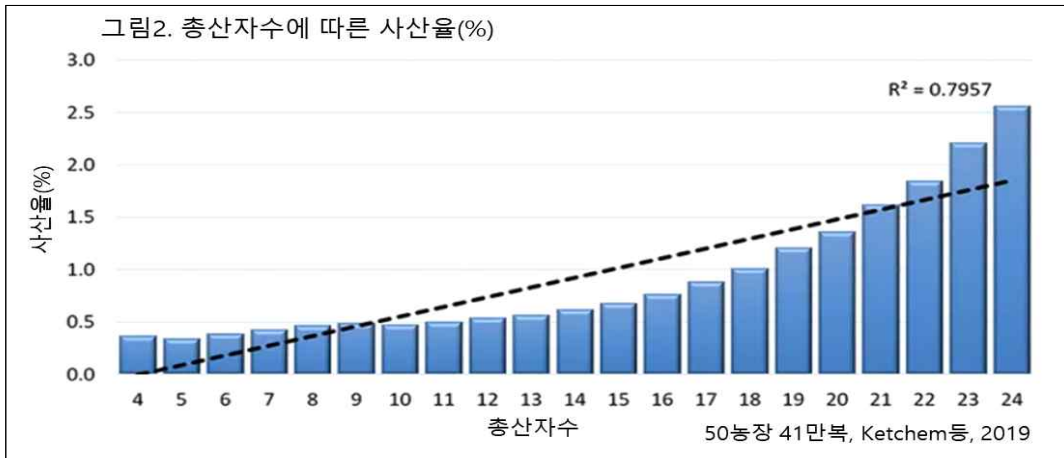


그림3. 산자수 증가에 따른 사산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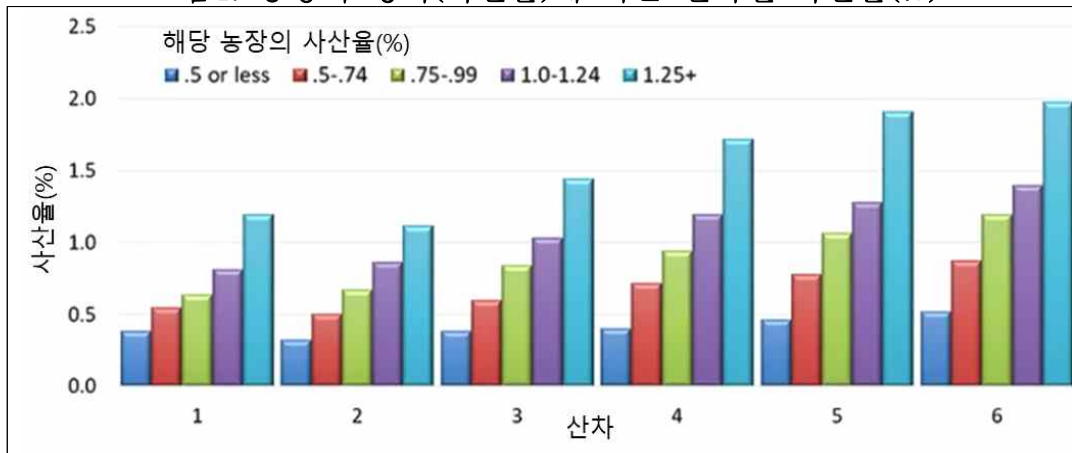
○ 전력

- 사산이나 난산 전력이 있으면 사산 확률이 높아짐

- 전 산차에 1두 이상의 사산을 경험한 모돈에서 사산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음
- 전 산차에 사산이 있는 모돈이 전 산차에 사산이 없는 모돈보다 사산이 2.5배 많았음
- 미국 50개 농장의 41만 건 이상의 분만자료를 주간단위로 분석한 결과, 45%의 모돈에서 사산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산의 70%가 20%의 모돈에서 발생했다. 이 20% 모돈은 2두 이상의 사산 기록을 가지고 있었음(Ketchem 등, 2019).
- 반복적으로 사산이 많은 모돈이 있을 수 있음. 기록으로 확인하여 별도 관리함. 한 마리 때문에 평균이 나빠질 수도 있음

○ 산차

그림4. 농장의 성적(사산율)에 따른 산차별 사산율(%)



- 초산과 2산의 성적이 비슷하고 이후에는 산차가 증가하면서 사산 비율도 증가함(그림4, Ketchem등(2019)).

- 농장의 성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농장의 사산율이 5% 이하인 농장이 산차 증가에 따른 성적 저하가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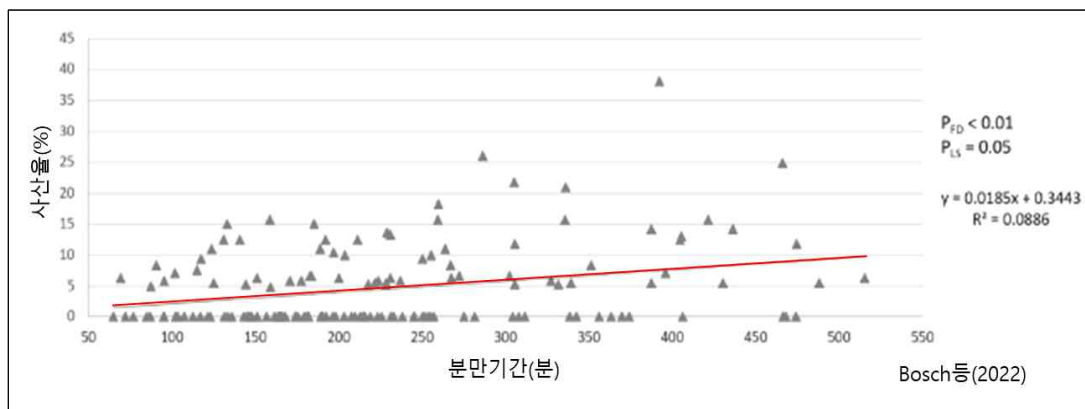
○ 분만기간

- 분만기간이 길어지면 사산이 증가함(그림5).

- 분만시간이 평균  $3.6 \pm 1.8$ 시간으로 품종과 체평점, 산자수, 사양관리, 산차, 자돈 생시체중 및 분만전후 사료급여 방식에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 2.6시간에서 4.4시간 안에 분만함
- 분만시간이 길어지면 사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분만기간이 길어지면 모돈의 활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만통으로 인해 활력이 소진된 모돈은 자돈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포유 초기의 자돈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그림5. 분만기간(분)에 따른 사산율의 변화



○ 임신기간

- 임신기간에 따른 복당 사산두수가 그림에 표시되어 있음. 임신기간이 115-117일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기간이 짧아지거나 증가하면 분만복수는 감소하지만 복당 사산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6).

그림6. 임신기간에 따른 분만복수(오른쪽) 및 복당사산두수(왼쪽)



○ 분만순서

- 분만 후반으로 갈수록 탯줄의 파열이나 조기 분리에 의한 사산이 증가함(그림7,8).

그림7. 분만순서에 따른 사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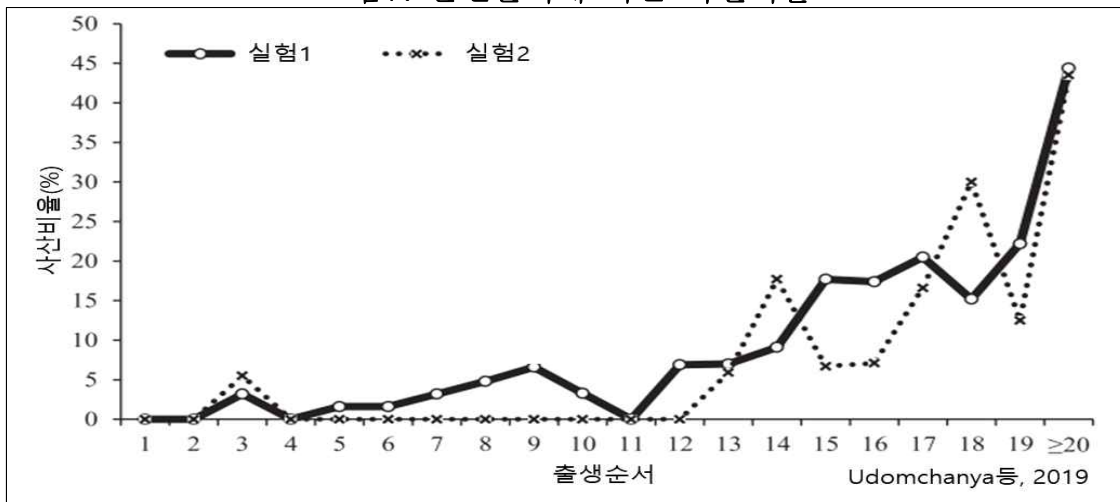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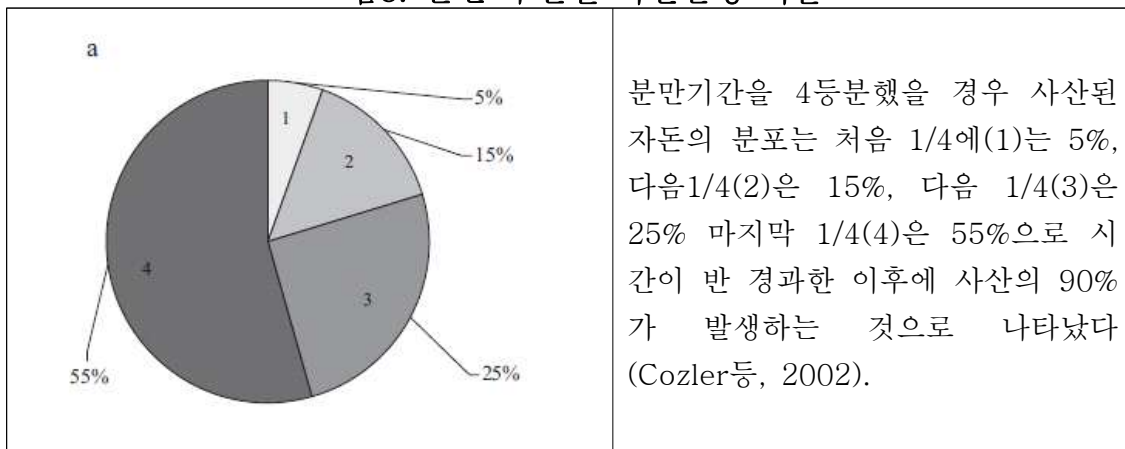


그림8. 분만 구간별 사산발생 비율



분만기간을 4등분했을 경우 사산된 자돈의 분포는 처음 1/4에(1)는 5%, 다음1/4(2)은 15%, 다음 1/4(3)은 25% 마지막 1/4(4)은 55%으로 시간이 반 경과한 이후에 사산의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zler등, 2002).

## ○ 기타

- 모돈이 너무 마르거나 과비인 경우 사산이 증가함
- 돈사의 온도가 22-24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에 의해 사산이 증가함
- 모돈의 변비가 심할수록 분만기간이 증가하여 사산이 증가함
- 정상적인 태아의 분만 간격은 13-18분인데 사산된 자돈의 분만간격은 45-55분이었음. 분만간격이 20분을 경과하면 사산이 증가함

## 4. 사산 감소 대책

### ○ 사산의 철저한 기록

- 철저한 사산 확인 : 사산의 형태에 따른 대책이 다름
  - 분만 전에 사망한 경우 : 임신말기 관리, 질병 등 확인
  - 분만 중에 사망한 경우 : 모돈상태, 돈사환경 등 분만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확인
  - 분만 직후 사망한 경우 : 분만보조 등 고려
- 필요한 경우 자돈을 해부하여 폐를 확인
  - 색과 물에 뜨는 여부 확인하여 호흡을 하지 못했으면 사산으로 기록
- 인센티브제도 활용 : SMS(Swine Management Service) 사례
  - 2005년부터 사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이라를 제외하고 사산을 포함한 총 산자수에서 이유하는 두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자돈생존율’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음
  - 자돈생존율 4%개선 목표를 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5년간 시행한 결과 사산으로 기록되는 자돈의 수가 복당 0.5두로 감소했음
- 전력이 있는 모돈 관리
  - 전 산차에 사산이 있는 모돈은 다시 사산을 생산할 확률이 높음
  -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만카드 등에 기록함
  - 분만사의 특정 구획에 배치하여 다른 모돈보다 자주 확인

○ 간호분만/분만보조

표1. 연장 근무시간 유무에 따른 농장의 성적

	농장	복수	산차	사산	모돈수	사산%	이유%	PSY*	총산
연장근로	13	183,532	3.29	0.70	5,346	4.4	89.8	34.86	15.83
정상근로	37	638,862	3.28	0.97	2,529	6.5	86.3	31.23	14.80
합계/평균	50	822,394	3.28	0.90	3,262	5.9	87.2	32.17	15.06

\*PSY는 분만을 90% 가정하여 교배복당이유두수에서 추정( $PSY=(PW/MF/YR)/90%$ ), Ketchem(2019)

- 분만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적극적으로 분만에 개입할 수도 있지만, 분만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간격은 20-30분이 적당함
- 분만이 많은 날에 분만사 근무를 16시간으로 연장한 13개 농장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37개 농장보다 사산율이 6.5%에서 4.4%로 감소하였으며 농장의 PSY도 3.63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표1, Ketchem등(2019)).

- 분만보조

- 보조분만을 하면 부수적으로 자돈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도와 줄 수 있음
- 분만관리가 좋으면 사산이 감소할 뿐 아니라 자돈의 활력이 증가하여 포유 중 폐사도 감소함
- 전담하는 사람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분만이 많은 날은 관리자 중 한 명이 일과 후에 남아 분만을 관찰해야 함

○ 분만유도

- 113일령 오전 8시에 분만유도를 실시하고 다음날 근무시간에 분만한 모돈은 간호분만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모돈은 무간호 분만한 결과 사산수가 감소하였음(표2, Nguyen등, 2011).

표2. 유도분만 및 간호분만에 따른 번식성적

	분만유도 주간 간호분만	자연분만 무 간호분만	p
분만복수	56	84	NA
산차	6.4±0.6	5.5±0.5	>.05
총산자수	11.8±0.4	12.3±0.4	>.05
생존자돈수	11.5±0.4	11.4±0.4	>.05
사산수	0.4±0.09	1.0±0.17	<.001

- 낮에 분만하도록 분만을 유도하면 분만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입회 분만)를 높이는데, 농장별로 임신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록을 분석하여 농장의 평균과 산차별 평균 등에 의해 유도함
- 유도를 너무 일찍 할 경우 생시체중이 감소할 수 있음. 2회 주사할 수도 있음

### ○ Oxytocin

- 기능 : Oxytocin의 주요 기능은 비유축진과 자궁수축임
- 자궁 경관이 활짝 벌어지기 전, 또는 첫 자돈이 분만하기 전에 투여할 경우 난산을 초래할 수 있음. Oxytocin은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린 이후 사용
- 사용
  - oxytocin을 사용하면 분만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탯줄이 파열되어 사산이 증가할 수 있음
  - 가능하면 4시간 경과후에도 분만이 지속되거나 5두 이상 분만한 경우에 사용함. 5두 분만 이전이나 8두 분만 이후에 oxytocin을 사용하면 사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Hoai Nam, 2023).

### ○ 분만시기 예측

- 분만개시하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모돈의 외음부와 유두에서 유즙의 분비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그림9. 분만 전후 모돈의 호흡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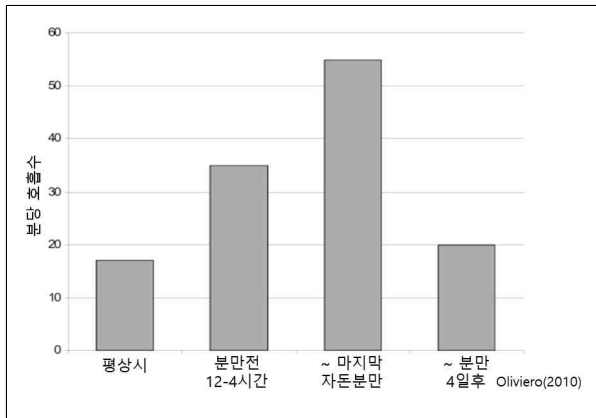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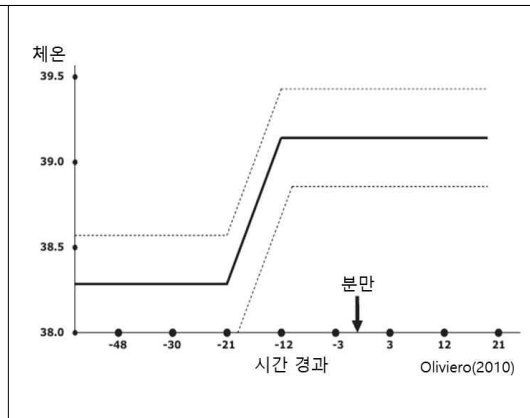


그림10. 분만 전후 모돈의 체온



- 분만 개시 시간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분만을 대비할 수 있고 분만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평상시(A) 호흡은 18회/분인데 첫 자돈이 분만되기 12-4시간 전(B)에는 35회/분, 그리고 4시간 전부터 마지막 자돈이 분만될 때까지(C)는 55회/분을 유지하다가 마지막 자돈이 분만한 이후 4일간(D)은 20회를 유지함(그림9).
- 평상시 체온 38.3도인데 분만개시 21시간부터 점차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여 분만전 9시간에 최고인 39.2도를 기록하여 분만 후 21시간까지 지속됨(그림10).
- 분만 3일 전부터 5일 후까지 분만틀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험한 결과 분만 직전 24시간 동안 모돈이 기립해 있는 시간이 유의적으로 길었음.( $p < .001$ ) 이것을 바탕으로 모돈의 분만 개시 시간을 예측하는 S/W를 개발할 계획임

○ 기타

- 모돈의 관리
  - 모돈의 체형을 관리해야 함. 너무 야위거나 살진 경우 분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비타민E가 분만기간을 단축하여 사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음. 특히 노산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음
  - 돈군이 노화되지 않도록 후보돈을 계획에 의해 꾸준히 보충함
- 환경관리
  - 분만사의 온도를 20-22도 이하로 유지하고, 모돈의 뒷부분에 열원을 설치함

## 5. 분만관리 매뉴얼 (예시)

- 관리자는 분만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함
- 분만유도 : 관리자 근무시간 중 분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함.  
114일 이전에는 유도하지 않음
- 전 산차에 사산이나 난산 등의 전력이 있는 모돈은 일정한 구역에 배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관찰/체크/기록
  - 분만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스스로 분만하게 함
  - 분만이 개시되면 조용히 관찰하며 20-30분 간격으로 방문시 마다 시간과 사산과 분만 자돈수를 기록하여 분만 간격을 파악함
  - 6-7두 분만한 이후에 40분간 다음 자돈이 분만되지 않을 때 oxytocin을 주사함. 1차 주사 이후에도 20분간 자돈이 분만되지 않으면 2차 주입하고 이후 20분이 경과해도 분만되지 않을 경우 손으로 자돈을 확인하고 분만을 도움. 후반부에는 사산 발생 확률이 증가하므로 방문/확인 간격을 줄임
- 조산
  - 분만 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독하고 조산한다
  - 조산을 실시하면 다른 자돈이 산도를 막고 있는지 확인하고 손이 닿는 자돈은 모두 꺼냄. 자돈의 태막이 상한 경우 인공호흡 실시
  - 조산한 모돈은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도와줌
- Oxytocin
  - 모돈의 분만이 지연되거나 진통을 하지 않을 경우 oxytocin을 5IU(0.5ml) 근육주사함. 수의사의 결정으로 2.5IU(0.25ml)을 외음부에 주사할 수도 있음
  - 필요한 경우 20-30분 간격으로 주사함. 2회 이상 주사하지 않음. 너무 많은 양을 주사하면 자궁이 잠겨서 사산이 증가할 수도 있음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에 한돈 추가 방안(안)

- ◎ 본 자료는 대한한돈협회·한돈미래연구소에서 손해보험 담당자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한돈수입안정보험 도입 방안 초안임
- ◎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정부 주관으로 열린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축산분과 TF 회의’에 한돈수입안정보험 도입(안)을 공식 제안함
- ◎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상품목에 한돈을 불포함하였으나, 정부 주관 연구용역을 올해 추진한 후 한돈수입안정보험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1 핵심 식량산업 ‘한돈’

- ◎ 한돈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핵심 식량산업으로 성장\* 하여 한돈 생산기반 유지·보호 정책 필요
  - \* 생산액(9조6천억), 소비량(총 육류소비량의 약 50%)
- ◎ 사료값 급등 위기 시, 사료구매자금 지원 외 경영안정대책 없음

#### 가. 생산액

- 농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은 돼지, 쌀, 한육우, 계란, 닭 순('22년 기준)
  - 돼지는 9조6,496억원으로 생산액 1위 품목, 이어 쌀이 7조8,752억원 순
- 표. 농업 생산액 상위 5개 품목

(단위 : 십억 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1	쌀	8,401.2	쌀	8,350.7	쌀	8,448.7	쌀	9,526.3	돼지	9,649.6
2	돼지	7,118.5	돼지	6,392.4	돼지	7,177.5	돼지	8,478.5	쌀	7,875.2
3	한육우	5,092.4	한육우	5,652.9	한육우	5,992.2	한육우	7,236.9	한육우	6,334.1
4	닭	2,259.0	우유	2,151.9	우유	2,196.0	계란	2,470.4	계란	2,593.6
5	우유	2,131.4	닭	2,102.6	닭	2,027.0	닭	2,274.3	닭	2,581.3

※ 자료 :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농림축산식품부, 2023)

## 나. 소비량

-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10년간 38.1% 증가, 국민 주식으로 자리매김
  - 소비량 : (돼지) ' 14년 21.8kg/인 → 30.1kg/인, (쌀) ' 14년 65.1kg/인 → 56.4kg/인



※ 육류, 쌀 1인당 연간 소비량: 양곡소비량조사(통계청, 2024), 육류소비량(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2024)

## 2 농가 경영안정 제도 해외 사례

### 가 [미국] 돼지 경영안정 보험 제도

#### □ (가격보장보험) 목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 보전

- 보험상품 : 미국의 가축위험보험(livestock Risk Protection Insurance)
  - 가입대상 : 돼지, 육성우, 비육우, 양
  - 상품내용 :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자가 결정한 목표가격(지육판매)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을 보험금 지급
  - 지급상황 : 지육판매 목표가격 5,500원/kg 설정 시(생산비 5,000원/kg이라도)
    - 판매가격이 5,500원/kg 미만이면 차액 보상
    - 판매가격이 5,500원/kg 이상이면 보상 없음
- ※ 해외시장(미국)의 경우 목표가격 설정 시 돼지 선물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 (수익보장보험) 판매가격과 생산비 차이 보전

- 보험상품 : 미국의 가축총수익보험(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
- 가입대상 : 돼지, 육용우, 젖소 등
- 상품내용 : 가축의 판매가격에서 생산비(가축비, 사료비 등)을 뺀 부분을 총수익으로 간주, 기대한 수익보다 낮을 때 보험금 지급
- 지급상황 : 가축 생산비가 5,000원/kg, 예상마진 200원/kg인 경우
  - 판매가격이 5,200원/kg 미만이면 마진의 차액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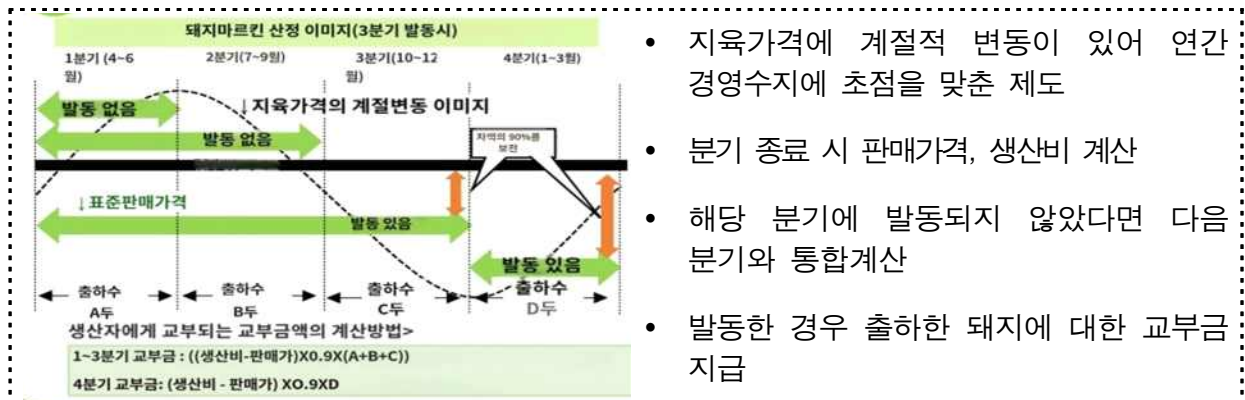
## 나 [일본] 육돈 가격차액보전사업

- 사업목적 : 축산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판매가격이 표준생산비를 밑돌 경우 그 차액의 90% 교부금으로 지급
- 기금조성 : 농가 적립금(1) + 지역 및 정부 기금(3)
  - 생산자단체가 육돈 가격차액보전사업 적립금\*을 자주적으로 모음

### \* < 생산자 적립금 단가 >

◎ 보전금단가(기준가격 - 평균가격) ÷ 월별출하지수 × 보험적용기간의 월별 출하비중 × 출하중량(75kg)

- 보전방식 : 분기별 판매가격<sup>1)</sup>과 생산비<sup>2)</sup>를 계산하여, 평균 판매가격이 평균 생산비를 밑돌 경우 차액의 90% 교부금으로 지급
  - 1) 판매가격 : (지육가격(엔/kg) × 지육중량(kg/두)) + 부산물 가격
  - 2) 생산비 : (생산비 통계 각 비용 × 농업물가통계 물가지수) + 도축비



### ○ 관련법령 :

#### 축산 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교부금 교부)

①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는 표준판매가격이 표준생산비를 하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에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교부금(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교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적립금(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적립금”이라 한다.)의 적립에 필요한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일 것.

가. 표준판매가격이 표준생산비를 하회한 경우에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일 것.

나. 육용우 또는 육돈 생산자에 대한 지불에 충당되는 것으로, 교부금이 교부되는 경우에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일 것.

다. 적립액 그 밖의 사항이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가 농업수입안정보험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
- (사업근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사업시행) 2015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중
- (시행주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 (대상품목)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
- (보험료지원) 정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30~45%, 농가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5~20% 수준
  - ※ 지방자치단체 지원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콩류 보장내용) 농업수입 감소, 경작불능 보장
  -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실제수입이 기준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
    - ※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만 보장하는 반면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과 가격을 모두 고려해 수입 감소분을 보장

보장명	지급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농업수입 감소	보험가입금액의 0% ~ (1-자기부담비율)%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기준수입
경작불능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30~40%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 비율

\* 식물체피해율 :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가입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보험금(농업수입감소 보장)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sup>①</sup> - 자기부담비율<sup>②</sup>)

①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예시 >

- 기준수입 : 1,000천원 = 평년 수확량 × 농지별기준가격<sup>1)</sup>
  - 1) 기준가격 : 보험가입 직적 5년간 서울 양곡도매시장 중·상품의 올림픽평균값 × 농가수취비율\*의 올림픽평균값
  - \* (농가수취비율)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 실제수입 : 600천원 = (조사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농지별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sup>2)</sup> 중 낮은 값
  - 2) 수확기가격 : 수확년도 서울 양곡도매시장 중·상품의 올림픽평균값 × 농가수취비율의 올림픽평균값
- 피해율 : (1,000천원-600천원) ÷ 1,000천원 = 40%

② **자기부담비율** : 20%, 30%, 40%(계약조건에 따라 다름)

□ (사업예산) 8,100백만원(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지원)

○ (' 23) 2,500백만원 → (' 24) 8,100백만원 (5,600백만원, + 224%)

※ 정책보험 예산비교 : 가축재해보험 112,220백만원, 농작물재해보험 535,584백만원

□ 경영안정 대책으로 기금보다 보험이 적합

- 정부에서는 기금사업은 절대 불가하는 입장인 가운데,
  - 일례로 축산단체들이 요구한 바 있는 사료안정기금의 도입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일본식 기금보다 미국식 보험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가격보장 방식 보다는 수익보장이 농가보호에 유리

- 국내의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보장 방식
  - 현재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도매시장 경매가로 기준가격을 책정
  - ※ 농작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사료비 폭등 등) 하더라도 평년가격보다 시세가 높으면 가격보장 조건이 발동하지 않는 경우 발생
- 돼지에서는 생산비가 기준인 수익보장보험이 적합한 것으로 건의
  - 사료값 등 생산비 폭등 시 보험이 발동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수익보장보험은 생산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 제시가 관건임

□ 미국의 수익보장보험을 벤치마킹한 한돈수입보장보험(가칭) 도입

- 미국에서는 돼지 경영안정 보험제도로 가격보장과 수익보장 두 가지 방식 모두 운영 중
- 정부에서는 콩 등 일부 농작물 한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개편을 준비 중임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개편 시, 한돈수입보장보험\*은 생산비 기준의 수익보장으로 하되, 기준가격은 생산비 기준으로 여러 구간 구분 적용



## 가 추진배경

- 한돈산업은 농축수산업 중 생산액 1위의 국민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지만,
- 환경·질병·인력 등 현안과제와 동물복지·탄소중립·대체육 등 다가오는 위협요소가 공존하고 있는 전환점에 있음
- 양적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한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임.
  - 특히, 생산자 부문에서 한돈농가 경영안정 보험제도가 핵심 과제임

<표>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대한한돈협회, 2023년)

순번	추진 목표	추진 전략
1	<ESG 경영> ESG를 핵심가치로 하는 경영 패러다임 전환	① 뉘새없는 한돈농장 만들기 ② 지역사회 기부와 공헌 ③ 모범적인 탄소저감과 자원순환 산업으로 전환 ④ 농장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매력적인 생활 제공
2	<생산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경영 보장	① 한돈산업 육성 지원법 제정 ② <b>한돈농가 경영안정 보험제도 도입</b> ③ 사료원료 수급 안정화 및 대체 원료 공급체계 마련 ④ 한돈 자급율 목표 설정 및 유지 정책 도입 ⑤ 한돈팜스를 이용한 경영예측(자율 수급) 기능 강화 ⑥ 도매시장 가격 안정화 및 돼지 시세 보완장치 마련
3	<소비자> 소비자에게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한돈 공급	① 한돈 품질 인증제도 도입 및 등급제 개선 ② FMD 백신 이상육 피해 해소 및 백신 최소화 ③ 유색종 등 한돈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 부여
4	<동반성장> 지역사회, 전후방 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① 농촌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리더 한돈인 ② 전후방산업과 ‘한돈산업 발전협의회’ 구축·운영 ③ 준회원제 도입 및 분야별 전문인력 조직화 ④ 전후방 산업과 동반성장으로 수출산업 전환
5	<기술혁신> 첨단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	① 스마트축사, 인공지능 등 시설현대화 지원 ② 인력난 해소를 위한 차세대디지털 기술 개발 및 활용 ③ 6차 산업 모델 제시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돈산업
6	<강한협회> 대한한돈협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실시간 농가 소통 강화 ② 지원 요구보다는 발전 방향을 제시 ③ 작은 정부, 큰 생산자단체로 기능 강화 ④ 대국회, 대정부 활동 강화와 이익단체로의 전환

## 나 시범사업계획(안)

###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한돈산업과 한돈 생산기반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필요
  - 또한 농가 입장에서는, 돼지의 가격 하락 및 생산비 급등 등 상황에서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 제도 절실

### □ 사업내용

-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등 지원

### □ 지원 자격 및 요건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후계농, 전국전산관리프로그램(한돈팜스\*) 사용자 우선 참여
  - \* 한돈팜스: 한돈협회가 운용, 전국 한돈농가 중 약 75%(사육두수 기준 약 80%)가 참여하며 매월 사육 현황 등 전산 관리

### □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안) ※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동일

- 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 지원내용

- 순보험료 : 50% 보조 ※ 나머지 50%는 농가 또는 지자체 일부 부담

### □ 사업규모

- 돼지 사육농장 500호(전체 농가수의 10% 내외)
  - ※ 가입자는 3천두 이상, 2천~3천두, 2천두 이하 등 규모에 따라 적정 분배

□ 보장방식

○ (1안) 가격보장

- 현재의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유사한 보장 방식
- 기준가격<sup>1)</sup>과 판매가격<sup>2)</sup>의 차액 보전

1) 기준가격 : 직전 5년간 도매시장의 올림픽 평균가격

2) 판매가격 : 당해년도 평균가격

-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기준가격 산정 방식 일부 보완\* 필요

《 보완 검토사항 》

◎ 올림픽 평균가가 생산비 이하일 때는 ‘생산비 + 최소 마진’ 을 기준 가격으로 적용

○ (2안) 수익보장

- 미국의 가축총수익보험(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과 유사 방식
- 기준가격<sup>1)</sup>과 판매가격<sup>2)</sup>의 차액 보전\*

1) 기준가격 : 생산비 + 마진

2) 판매가격 : 당해년도 평균가

\* 《 추가설명(예시 :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하는 방식) 》

○ 발동조건 : 연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때, 수익 감소분 보장

○ 기준가격 : 통계청 비육돈 생산비\* 기준(116kg 적용) 5개 구간 구분

\* (통계청 생산비 사유) 농가별 생산비를 입증할 구체적 방법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가통계 생산비 활용시 문제해결 가능. 다만 생산비가 농가마다 다르므로 구간을 나눠 사용자의 선택권 부여

○ 보험금 : (기준가격 - 판매가격) × 116kg × 76.7% × 연간 출하두수

○ 상품내용 : 가입자가 가입구간(5구간)을 선택, 가입구간에 따라 보험 발동조건이 되는 기준가격이 달라지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변동되는 방식

표. 기준가격 구간과 보험료 차등 적용(예시) ※ 단순 참고양식으로 실제와 무관

구분	기준가격	보험료	보험금
1구간	생산비의 115% 초과	기준보험료 보다	기준보험금 보다
2구간	생산비의 105 ~ 115%	낮음	높음
3구간	생산비의 ± 5%	기준보험료	기준보험금
4구간	생산비의 85 ~ 95%	기준보험료 보다	기준보험금 보다
5구간	생산비의 85% 미만	높음	낮음

□ 보험료(시범사업)

○ 총 50억 원 내외(모돈 200두 규모 기준 : 호당 1,000만원, 두당 2,777원)

※ (산출식) 1,000만원(호당 보험료) × 500호(가입자수) = 50억 원(총 보험료)

\* 《 모돈 200두 규모 돼지농장의 보험료와 보험금 예시 》

• 기본정보 : 모돈 200두, 연간 출하두수 3,600두(평균 MSY 18두 적용)

• 보험료 : 1천만 원(두당 2,777원)

(단위 : 만원)

구 분	금 액	보장두수	비 고
보험료	1,000만원 <sup>1)</sup> (두당 2,777원)	3,600두 (모돈 200두 규모)	

<sup>1)</sup> 산출식 : 두당 2,777원 = 1,000만원 ÷ 3,600두

• 보험금 : 1억 원(두당 27,777원)

- 판매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이 314원/kg인 경우, 1억 원 지급 조건 성립

(단위 : 만원)

구 분	금 액	가격하락	비 고
보험금	10,000만원 <sup>2)</sup> (두당 27,777원)	- 314원/kg <sup>3)</sup>	

<sup>2)</sup> 산출식 : 두당 27,777원 = 10,000만원 ÷ 3,600두

<sup>3)</sup> 판매금액 - 기준금액 차액 : 314원/kg = 27,777원/두 ÷ 115kg ÷ 76.7%

□ 향후 계획

① (도입기) 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위험관리체계 기틀 마련(' 25 ~ ' 26)

- 수입안정보험 확대·개편 시 한돈 포함 및 ' 25년부터 시범사업 시행

② (정착기) 보장 확대 및 운영관리체계 정비로 성장 준비(' 27 ~ ' 29)

- 시범사업 기반 적정 보험료, 보험금 산정 및 반영, 가입자수 확대 추진

③ (성장기) 보험제도 품질개선으로 가속 성장(' 30 ~)

- 전산기록(한돈팜스)을 활용한 농가별 생산비 등에 따른 보험 기준 마련 등

1. 한돈 생산액이 높아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을까?

- 돼지 두당 약 3,000원(정부 50% 지원시 1,500원 자부담) 보험금을 납부하고, 두당 최대 약 2만8천원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시범 도입 시 참여 가능 예상 ※ 일본의 경우에도 농가부담 약 3,000원
- 평균 사육두수 2,000두 기준 약 1천만원/년 보험금 납부, 최대 1억원 보장
- 500농가 시범사업 시, 정부 예산 약 50억원 소요

2. 수입이 안정될 경우, 과잉생산이 되지 않을까?

기존(농업수입안정보험)	해결방안(한돈수입보장보험-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보장에 따른 생산 확장으로 과잉 공급 등 수급 불안 우려</li> <li>- 농작물 생산량 늘면 보험료 부담 증가 → 과잉 생산 방지 유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축사육제한과 장치산업 특성상 높은 시설 투자비 등으로 인해</li> <li>- 갑작스런 신규유입이나 생산쏠림 등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낮음</li> </ul>

3. 출하량(두수) 조사에 많은 행정비용이 들거나, 개별농가 생산비 확인 등 조사가 어렵지 않을까?

기존(농업수입안정보험)	해결방안(한돈수입보장보험-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확량 파악을 위한 품목별 수확량 전수조사에 많은 행정비용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의 경우, 모든 출하돼지에 대해 등급판정* 중이므로 별도의 전수조사 행정비용 미발생</li> <li>* (등급판정) 축평원은 농가별 출하두수, 출하체중, 도체등급 등 정보 수집·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가 신고한 수확량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돈수와 평균 MSY 또는 해당 농가의 MSY 등을 대입하여 출하두수 적정 여부 검증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의 투입, 생산, 수입, 소득 정보 확인 지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생산비 활용, 여러 구간으로 차등화 하는 방식 적용 가능</li> <li>- 한돈팜스 전문사용자 우선 지원</li> </ul>

4. 농작물과 달리 공급량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은 데, 굳이 정부가 경영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가. 돼지고기는 물가지수 1위 품목으로써 소폭 변동에도 소비자 체감 높음

- 돼지고기·콩의 소비자 가격 20% 인상 시,
  - 지출비용이 연간 1인당 돼지고기는 +11만1천원, 콩류는 +3,420원 증가
  -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은 돼지고기가 콩류 대비 약 33배 높음

<표> 돼지고기와 콩의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비교

(단위 : kg/인/년, 원/kg, 원)

구 분	1인당 소비량 (a)	도매 가격	소비자가격				소비자 지출 증가 (a×(c-b))
			인상전		20% 인상후		
			단가(b)	소계(a×b)	단가(c)	소계(a×c)	
돼지고기	30.1	5,278	19,000	556,850	22,800	668,220	111,000
콩 류	1.9	5,540	9,000	17,100	10,800	20,520	3,420

※ 출처 : 1인당 소비량(콩류 : 통계청, 양곡소비량 조사결과, 돼지고기 : 육류유통수출협회)  
 도매가격(콩 : 농촌경제연구원 6월 국산콩 가격 기준, 돼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5월 지육시세)  
 소비자격(돼지고기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삼겹살 시세, 콩류 : 한국소비자원 서리태 시세)

- 따라서, 돼지고기는 타 품목대비 가격상승 시 가계부담이 큰 만큼, 경영안정제도 도입을 통한 생산기반 보호와 자급을 유지가 필요함

나. 돼지고기는 생산비 비중이 높아(마진을 낮음), 적은 변동 폭에도 농가 경영피해 심각

- 돼지 두당 판매가격 35~40만원, 순수익 3~5만원 (약 10%)

다. 돼지는 수급변동에 따른 가격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적은 수급변화에도 가격 변동이 상대적으로 큼)

◎ 돼지는 직전년 대비 수급 변동성(0~2.9%)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 수급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을, ▲월별 가격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1) 직전년 대비 수급 및 가격 변동성

○ 돼지는 콩류 직전년 대비 수급 및 가격 변동성 낮음

- 수급변동성 : 직전년比 콩류는 -23~37%, 돼지는 0~2.9% 변동
- 가격변동성 : 직전년比 콩류는 -8.5~19.9%, 돼지는 -1.8~12.8% 변동

2) 최근 5년간 수급 및 가격 변동율

○ 돼지는 콩류 대비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률이 10배 높음

- 콩 류 : 수급 1% 변동 → 가격 0.5% 변동
- 돼 지 : 수급 1% 변동 → 가격 5% 변동(콩류 대비 10배 수준)

<표> 돼지고기와 콩류의 직전년 대비 가격 및 수급 변동 비교

구 분	콩 류		돼 지	
	가격변동	수급변동	가격변동	수급변동
2019년	7.7%	17.8%	-12.0%	3.0%
2020년	-2.4%	-23.2%	10.7%	2.9%
2021년	19.9%	36.9%	12.8%	0.0%
2022년	-8.3%	17.3%	10.7%	0.9%
2023년	-8.5%	8.9%	-1.8%	1.0%
변동폭	-8.5%~19.9% (28.4%p)	-23%~37% (60%p)	-1.8~12.8% (14.6%p)	0%~2.9% (2.9%p)
비 고	수급 1% 변동 → 가격 0.5% 변동		수급 1% 변동 → 가격 5% 변동	

3) 연중 최대·최소 가격 간 차이

○ 돼지는 콩류 대비 연중 가격 급등락이 심한 품목임

- 연중 최대·최소가격 비교 시, 돼지 35% ~ 75%, 콩류 5% ~ 21% 수준

<표> 공류와 돼지의 월 최대·최소 가격 비교

(단위 : 원/kg)

구 분	공 류		돼 지	
	월 최대 가격	월 최소 가격	월 최대 가격	월 최소 가격
2019년	5,663원/kg	5,155원/kg	4,791원/kg	3,143원/kg
2020년	6,175원/kg	5,100원/kg	5,115원/kg	2,923원/kg
2021년	6,585원/kg	6,197원/kg	5,374원/kg	3,527원/kg
2022년	6,033원/kg	5,503원/kg	6,385원/kg	4,135원/kg
2023년	5,507원/kg	5,256원/kg	5,857원/kg	4,326원/kg
변동폭	5%~21% (16%p)		35%~75% (40%p)	
비 고	연중 가격 변동이 약함		연중 가격 변동이 심함	

☞ 돼지는 계절·수입육·질병 등으로 인한 작은 수급 변화에도 큰 폭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5. 농가가 보험금을 납부할 준비는 되어 있나?

- 한돈산업은 전업화를 이루며, 자부담 없는 정부 보조지원에서 벗어나 보험 등을 통해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경영안정을 추구하는 여건이 자리 잡음
  - 예시)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돼지 95% 이상, 소 15% 등 순
-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큰 장치산업으로써, 젊은 한돈인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보험제도 요구



## 별첨2

### 가축총수익보험(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 계산식 예시

- 미국 농무부산하 연방농작물보험공사(FCIC) -

순번	구분	금액
1	Expected gross margin (예상 마진)	\$470
2	Deductible (자부담)	\$20
3	Guarantee (보증액)	\$450
4	Sale price (판매가)	\$30
5	Yield Factor (수율)	0.74
6	Assumed weight (260/100) 출하 시 평균 예상 무게	2.6
7	※ 산출식 : $4 \times 5 \times 6$	\$57.72
8	Feed price (사료비)	\$20
9	Actual gross margin, per animal (실제 마진-두당) ※ 산출식 : $7 - 8$	\$37.72
10	Head of swine sold (판매 두수)	10
11	Actual gross margin (실제 마진) ※ 산출식 : $9 \times 10$	\$377.20
12	Guarantee (보증액)	\$450
13	Actual gross margin (실제 마진)	377.20
14	Indemnity payment (보험금) ※ 산출식 : $12 - 13$	\$72.80

## 2024년 8월 한돈팜스 수급 전망 보고서

2024년에도 생산성을 높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합니다.

### 1. 7월 한돈 산업 동향 및 8월 가격 전망

구분	6월	7월	변동율(%)	비고
도축두수(두)	1,365,086	1,486,532	8.9 ▲	
도매가격(원/kg)	5,969	5,694	4.6 ▼	
삼겹살가격(원/100g)	2,593	2,715	4.7 ▲	
목살가격(원/100g)	2,422	2,561	5.7 ▲	
일 평균 경매두수(두)	1,402	1,405	0.2 ▲	
돈육 수입량(톤)	42,495	45,231	6.4 ▲	2023년 7월 돈육 수입량 30,689톤

구분	5월	6월	변동율(%)	비고
국내 재고량(톤)	38,779	36,602	5.6 ▼	
수입 재고량(톤)	102,554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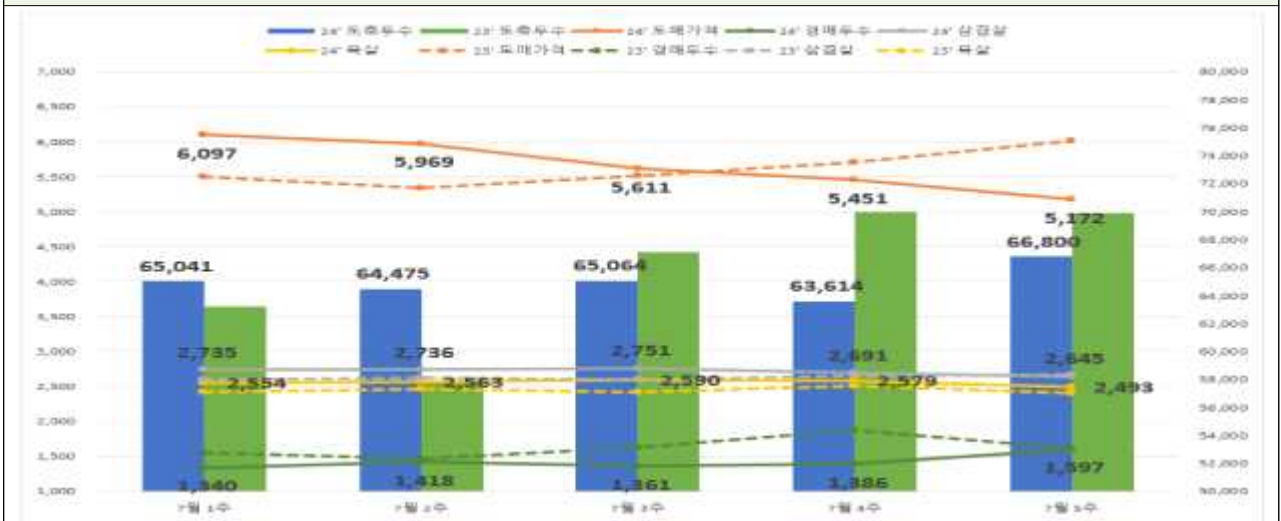
7월 도축두수는 전체 148만6,000두로, 전월 136만5,000두에 비해 약 12만1천두가 증가하였으며, 돼지 도매가격은 5,694원/kg으로 전월 5,969원/kg 대비 275원/kg (약 4.6%) 하락, 전년 동월 5,407원/kg 대비 287원/kg (약 5.3%) 상승하였다.

7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4만5천톤으로 전월 대비 6.4% 증가, 전년(3만톤) 대비 47.4% 증가하였다. 7월 또한 6월과 마찬가지로 4만톤대를 유지하였으며, 전년부터 수입이 재개된 독일 삼겹살의 경우 7월에 4,153톤이 수입되며 스페인 다음으로 많은 수입량을 기록했다. 현재까지 전체 수입량 누계는 31만7천톤으로 전년 동기 25만7천톤 대비 약 23.5% 증가한 상황이다.

국내 돈육 재고량은 6월 약 3만6천톤으로 5월 3만9천톤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며, 수입 재고량은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월 10만톤까지 증가하였다.

7월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87원/kg (약 5.3%)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올해 현재까지 평균 돼지가격은 4,966원/kg으로 전년 동기 5,098원/kg 대비 132원/kg (약 2.6%)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월 평균 지육가(제주제외)는 5,500~5,800원/kg으로 전망 됨.



## 2. 향후 6개월 사육 및 출하 전망

(단위: 두, %)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추정 사육두수	12,073,000	11,576,000	11,474,000	11,322,000	11,067,000	11,737,000
추정 출하두수	1,470,000	1,411,000	1,590,000	1,721,000	1,693,000	1,455,000
전년 출하두수	1,480,105	1,432,564	1,672,271	1,774,471	1,625,657	1,826,631
전년 출하대비	99.3	98.5	95.1	97.0	104.1	79.7

8월 출하두수는 전년 동월보다 0.7% 적은 147만두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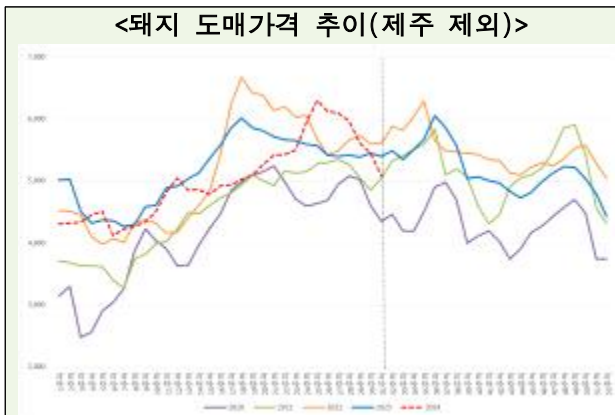
8월 작업일수는 전년보다 1일 적은 21일, 1일 도축두수는 7만두로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번식돈 사료 생산량으로 추정된 모돈수(후보돈 포함)는 약 98만여 두로 추정된다.

## 3. 사료생산 실적 ( 2021. 1 - 2024. 5 농림축산식품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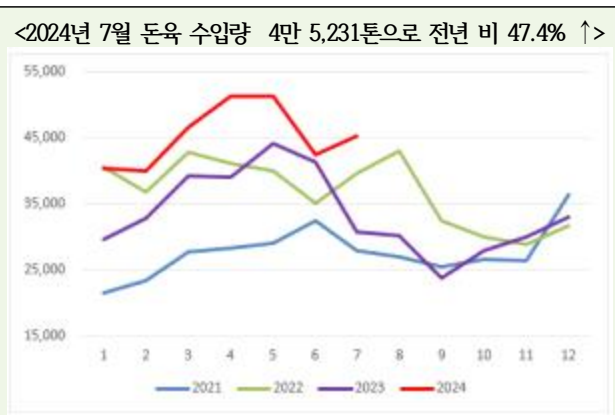


2024년 6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총 525천 톤으로 전년 동월(561천 톤)보다 6.5% 적었다. 번식돈 사료량은 90천 톤으로 전월 대비 11.6%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하였다. 비육돈 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한 435천 톤으로 조사되어 전체 사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누계 사료 생산량은 3,530천톤으로 동기간 역대 가장 많은 양의 사료가 생산되었다.

## 4. 국내 돈육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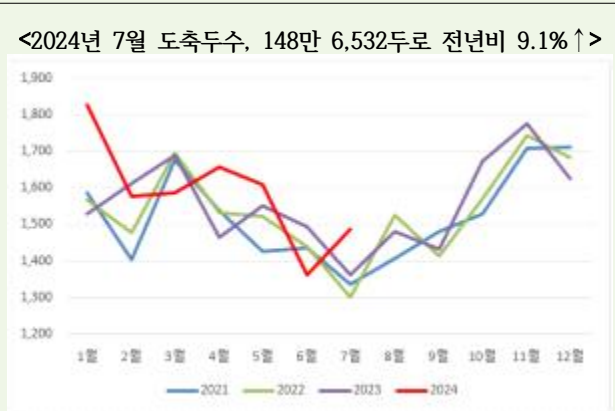
연도별, 주간별 전국 평균 비육 돈가 변화



연도별, 월별 돼지고기 수입동향(톤)



연도별, 월별 배합사료 생산량(톤)



연도별, 월별 돼지 도축두수(천두)

## 글로벌 돼지 이슈

Genesis사에 최근 발표한 전 세계 메가 양돈기업을 살펴보면 총 52곳이며, 그 중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5곳, 미국 기업은 3곳, 태국과 브라질이 각각 1곳씩 있다. 50위 안에 한국기업인 CJ가 35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주요 순위의 전 세계 메가 양돈기업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 1위. Muyuan Foodstuff Co, Ltd.. (중국) - 모돈 2백81만5천 두

- 1992년에 설립된 Muyuan 사는 돼지 사육, 사료 가공, 돼지 도축 및 가공 등을 통합하는 사업 체인이 형성된 회사이다.
- 회사의 총 자산은 한화 약 37조 원 이상이며, 15만 명의 직원과 292개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에는 6,120만 마리의 돼지를 생산하고 736만 두를 도축했다.

### 2위. Wens Group (중국) - 모돈 1백4십만 두

- Wens 사는 1983년에 설립되었으며 가축과 가금류 사육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축, 식품가공, 농축산 장비제조, 바이오제약 등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 현재 전국 20여개 지역에 402개의 지주회사, 4만5천400개의 협동 가족농장과 4만4천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천791만 두의 돼지를 생산했다.

### 3위. Smithfield Foods (미국) - 모돈 1백22만5천 두

- Smithfield 사는 미국, 유럽, 멕시코에 지사를 보유한 글로벌 식품 회사이다. 직원 수는 약 5만5천명으로, 전 세계 40개국 4천600개 고객사에 육류를 수출하고 있다.

---

#### 4위. CP Foods (태국) - 모돈 1백11만5천 두

---

- 1921년에 설립된 CP 사는 농축산 식품, 도소매, 통신, 텔레비전 등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다각화된 다국적 그룹 회사이며 그 외에도 금융, 부동산, 제약, 기계 가공 등 10가지 이상의 산업 분야에도 진출해 있다.
- 캐나다를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45만 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2021년 글로벌 매출은 한화 약 26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2년 중국 지역에서는 38만 마리의 모돈을 사육하고 850만 두의 돼지를 생산했다.

---

#### 5위. New Hope (중국) - 모돈 85만 두

---

- New Hope 사는 1982년에 설립되었으며 사료 가공, 축산, 식품 가공, 금융 투자를 아우르는 글로벌 무역, 가공, 판매 회사이다.
- 전 세계 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600개 이상의 지사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 수는 13만 5천여 명이다.
- 자산 규모는 한화 약 66조원, 2022년 매출액은 한화 약 52조원을 돌파했으며 2022년에는 1천461만 두의 돼지를 생산했다.

---

#### 6위. Pipestone System (미국) - 모돈 46만1천 두

---

- 1990년에 설립된 Pipeston 사는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현재 중서부 지역의 70개 이상의 모돈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 매니지먼트 외에도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멕시코에도 모돈을 보유하고 있다.

---

#### 7위. Sichuan Dekon Group (중국) - 모돈 45만 두

---

- Sichuan Dekon 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돼지 사육, 고급 양계 사육, 식품 가공 등이며 중국 내 12개 지역에 120개 이상의 자회사와 사업체를 두고 있다. Sichuan Dekon 사의 양돈 부문은 ‘회사+가족 농장’ 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 8위. Triumph Foods, LLCA (미국) - 모돈 43만5천 두

---

- Triumph Foods, LLC사는 2003년에 미국의 가장 큰 독립 돼지고기 생산자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로서 통합 비즈니스 모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돼지고기 가공 사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현재 2,8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Triumph Foods 사는 매년 돼지 6백만 두 이상을 가공하여 한화 약 2조원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다.

---

## 9위. BRF S.A. (브라질) - 모돈 39만7천825 두

---

- 1934년에 설립된 BRF S.A. 사는 다양한 식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브라질의 다국적 기업으로 식품 시장의 거대한 두 기업인 Sadia 사와 Perdigao 사가 합병하여 탄생한 세계 최대 식품 회사 중 하나이다.
- 판매 부문에는 자국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의 국가가 포함되며 제품의 경우 돼지고기 외에도 가금류, 소고기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 10위. Twins Group (중국) - 모돈 38만 두

---

- Twins 사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양돈, 사료 판매, 곡물 재배 및 무역, 돼지 도축 및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국영 기업으로 400개 이상의 자회사와 약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 2022년 사료 생산 및 판매량은 1천180만 톤을 돌파했으며, 933만 두의 생돈을 판매하여 한화 약 16조원의 생산 가치를 달성했다.

---

## 35위. CJ Group (한국) - 모돈 13만7천 두

---

- 1953년에 설립된 CJ 사는 식품, 제약, 엔터테인먼트, 물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최초의 설탕 제조“를 의미하는 ‘제일제당’에서 유래했다.
- 한국,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 13만 7천 마리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의 글로벌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 출처: <https://genesus.com/2023-world-mega-producer/>